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자원순환형 사회를 열어갑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 ✓ 2003년 1월부터 제품이나 포장재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물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여 우리사회를 「자원순환형 사회」로 만들어 갑니다.

- 01 제도의 개요 및 도입배경 3
- 0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의 각 주제별 역할 4
- 0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흐름도 5
- 04 제도의 주요내용 7
- 05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10
- 06 재활용의무 이행방법 11
- 07 재활용의무 미이행시의 벌칙 11
- 08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무상회수 11
- 09 분리배출표시제도 12
- 10 비용기보증금제도 14
- 11 외국의 EPR제도 15
- 1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성과 16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열어갑니다

제도의 개요 및 도입배경

개요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정부가 생산자에게 매년 재활용의무량을 부여하고, 생산자가 재활용 사업공제조합 등을 조직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 재활용의무량 미 이행시에는 폐기물의 실 회수·재활용비용의 최고 1.3배에 달하는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여 불이익을 줌으로써 의무이행을 촉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입배경

- 이전에는 소비자 및 지자체가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선별 등 재활용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생산자는 예치금납부 등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에는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 따라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생산자가 주도적으로 감량 및 재활용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 생산자가 재활용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소비자·지자체·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일본, 호주 등 여러 환경선진국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의 각 주체별 역할

소비자(주민)

-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일반쓰레기와 별도로 분리배출

생산자

- **재활용의무 이행**
(재활용의무 미이행시 재활용부과금 납부)
- **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신제품 구매자의 폐전자제품 무상회수**
-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표시 부착**

자치단체(시·군·구)

- 분리배출된 제품·포장재의 분리수거
- 분리배출에 관한 지역주민 홍보
- 분리수거함 설치 등 분리수거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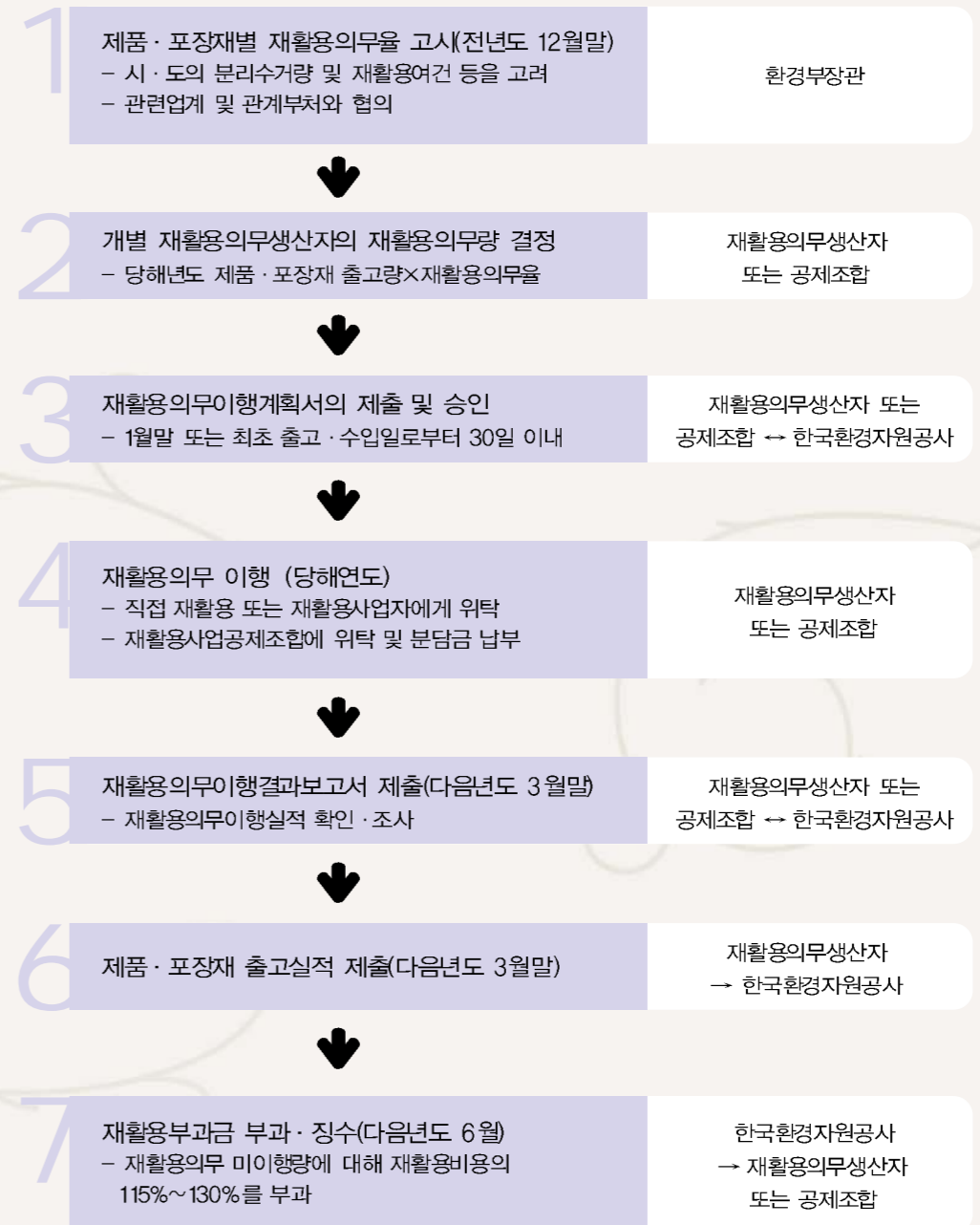
한국환경자원공사

- 생산자의 출고량, 재활용의무이행계획 접수·승인, 재활용부과금 부과징수 등 제도집행에 관한 사항
- 재활용의무 이행실태 점검

정부(환경부)

- 관련법령 제·개정
-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산정·고시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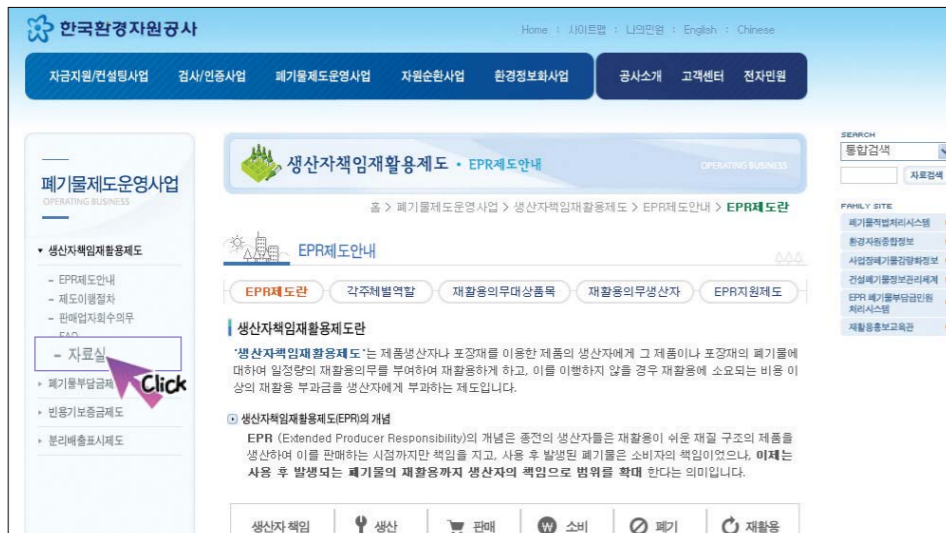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흐름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의무이행을 위한 각종서류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EPR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아래와 같이 간단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도의 주요내용

재활용의무율 고시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분리수거량,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전년도말까지 재활용의무율을 고시

● 재활용의무율 산출식

$$(전년도 재활용의무율 \times 가중치1) + (전전년도 재활용율 \times 가중치2) + (전전전년도 재활용율 \times 가중치3) + 조정계수$$

- * 가중치 : 2차년도 1, 3차년도 0.6, 4차년도 이후 0.5
- 가중치2 : 2차년도 0, 3차년도 0.4, 4차년도 이후 0.3
- 가중치3 : 2차·3차년도 0, 4차년도 이후 0.2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출

$$\text{당해년도 제품·포장재 출고량} \times \text{재활용의무율}$$

재활용의무 이행계획서 제출·승인

● 제출시기

-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당해 연도 1월말 제출 (당해연도에 최초로 출고·수입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고·수입일로 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재활용시설 보유현황(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재활용시설 보유현황)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계획(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 적절한 재활용수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미제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제도의 주요내용

재활용의무 이행방법

- 직접재활용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 재활용(위탁계약 체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위탁 및 분담금 납부

재활용의무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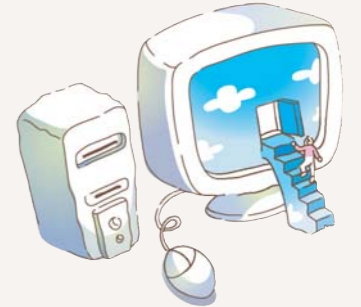
- **제출시기**
 -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년도 3월말까지 제출
- **제출서류**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의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 ※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미제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제도의 주요내용

제품·포장재 출고실적 제출

- **제출시기**
 - 제품·포장재 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다음년도 3월말까지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 결산보고서 등 제품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기초자료
 - ※ 개별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기한내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재활용부과금 부과·징수

-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에 대하여 부과**
 - 재활용실적이 실제 재활용실적과 차이가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된 양
 -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수량
- **부과금 산정·부과**
 - 미이행량에 대해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재활용비용의 115%에서 130%까지를 부과
 - 체납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품목별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은 EPR홈페이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자료실에서 확인하세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열어갑니다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제품

전자제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텔레비전 2. 냉장고 3. 세탁기(가정용에 한함) 4.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제외) 5.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6. 오디오 7.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8. 프린터 9. 복사기 10. 팩시밀리
전지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수은전지 12. 산화은전지 13. 니켈·카드뮴전지 14. 리튬전지(1차전지에 한함)
타이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5. 타이어
윤활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6. 윤활유
형광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7. 형광등

포장재

음식료품·농수축산물·세제류·화장품류·의약품 및 의약외품·부탄가스·살충살균제를 담거나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포장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8. 종이팩 19. 유리병 20. 금속캔(철캔, 알루미늄캔) 21.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	--------------------------------------------------------------------------------------------------------------------------------

'07년 화장품 유리병, '08년 망간·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신규편입 예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열어갑니다

재활용의무 이행방법

- 생산자가 스스로 재활용
-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
-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고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열어갑니다

재활용의무 미이행시의 벌칙

-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재활용비용의 115%에서 130%에 해당하는 재활용부과금을 부과
- 징수한 재활용부과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되어 재활용 산업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열어갑니다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무상회수

무상회수대상 전자제품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 ※ 판매업자의 무상회수의무는 소비자가 신제품을 구입한 경우에 한하며, 같은 종류의 제품이면 다른 제조업자가 생산한 것이라도 회수하여 함.
 - ※ 전자제품 무상회수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분리배출 표시제도

개요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일반국민들이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쉽게 확인하고 이를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

표시도안



재질 구분	도안내부 사용문자
플라스틱	PET, HDPE, LDPE, PP, PS, PVC, OTHER
금속	철, 알루미늄
종이	종이, 종이팩
유리	유리

※ 상기 '표시도안'의 내부문자 'PET'는 예시임

표시방법

- 표시방법 : 인쇄, 각인 또는 라벨링
- 표시크기 : 가로, 세로 최소 8mm이상
- 표시색채 : 포장재 색채와 대비되는 색채
- 표시위치 : 제품·포장재의 정면 또는 측면, 불가피한 경우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 가능
 - ※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² 필름 포장재는 100cm²미만인 포장재와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용기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
 - ※ 분리배출표시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분리배출마크는 어디서 다운 받나요?

EPR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아래와 같이 간단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앙하단의 생산지책임재활용제도(EPR)안내 버튼을 클릭합니다.

좌측메뉴 중 분리배출표시제도를 클릭 후 분리배출표시 도안자료실을 클릭합니다



- 도안은 각 재질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질에 맞는 해당 도안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빈용기보증금제도

빈용기보증금대상

-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
 - 주세법 제4조 제2호의 발효주류 및 제3호의 증류주류(소주, 맥주 등)
 - 청량음료류(콜라, 사이다 등)
 - ※ 빈용기보증금 시행여부는 생산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빈용기보증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
- 소매업자는 판매처와 무관하게 취급하고 있는 동종의 제품을 회수하고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
 - ※ 빈용기보증금 미 반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빈용기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품 목	규 격	빈용기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소매업자에게 50% 이상 지급)
주류 / 청량음료	190ml 미만	20원 / 개	5원 / 개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 / 개	13원 / 개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 / 개	16원 / 개
	1000ml 이상	100원~300원 / 개	20원 / 개



외국의 EPR제도

'90년 부터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페루 등 남미지역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독 일

- 포장법령(Packaging Ordinance)을 제정하여 생산자에게 사용된 제품의 수집·선별·재활용 의무를 부여
- 민간기구인 DSD(Duals System Deutschland)에서 생산자들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수집과 재활용등을 위한 회수체계의 구축을 유도
-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 및 용기 녹색마크(Green Dot)를 부착하게 함



프랑스

- 92년 제정된 포장법을 시작으로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수거에 관한 비용을 공동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활용 의무를 부과
- 민간기구(Eco-Emballages)를 설치하여 포장폐기물의 회수 및 분리를 경제적으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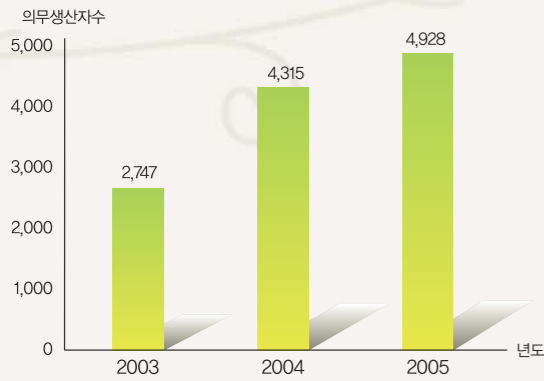
일본

- '97년부터 운영된 용기포장리사이클링법에 의해 정부가 매년 사업자에게 용기포장의 재활용의 무량을 결정·부과
- 소비자에게 포장용기의 분리배출 의무, 지자체는 포장용기의 분리수거와 필요에 따라 선별, 세 정, 압축, 일정량을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 용기생산자와 이용자는 지자체가 수집, 보관한 포장 용기를 인수하고 재상용화하는 의무를 부과
- 용기포장리사이클링협회를 설립하여 특정사업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고 재활용 의무사항을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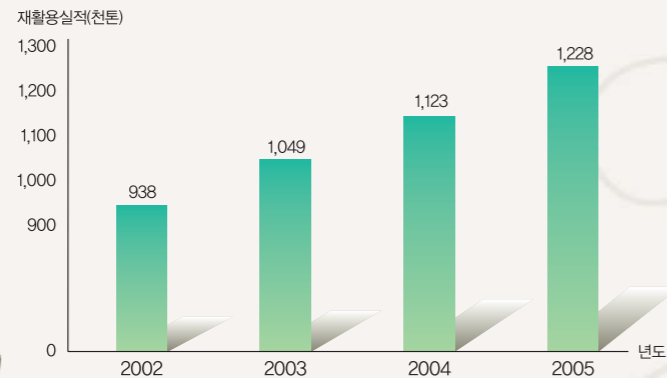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열어갑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성과

재활용의무생산자 : '03년 2,747개소 → '05년 4,928개소로 2,181개소 증가(▲79%)



재활용실적 : 매년 7%~12%씩 상승하여 '02년 예치금제도 운영 시 938천톤보다 30.9%(290천톤) 증가한 1,228천톤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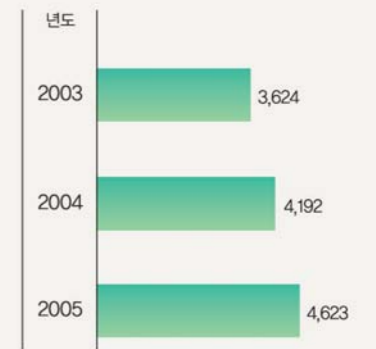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열어갑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성과

경제적 효과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3년동안 매립(소각)비용절감, 재활용품 경제가치 창출효과 등으로 1조 2,439억원의 경제적 총 편익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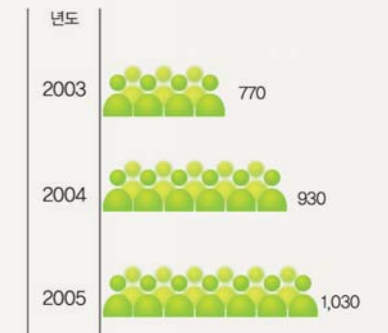
총계 1조 2,439억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3년간 2,73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총계 2,730명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는
폐기물 없는 미래를 위해 한발자국
앞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분리배출 표시 마크가 되어 있는 제품은
꼭 분리하여 모아주세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환경보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아직도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시겠습니까?

EPR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www.epr.or.kr



본사

주 소	전화 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www.epr.or.kr)	032-560-1802~11

지사

지 사 명	주 소	전화 번호
서울지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빌딩 4층	(02)3153-0531~8, 3153-0551~4(폐기물부담금)
경기지사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 220번지	(031)678-6441~9, 678-6481~4(폐기물부담금)
강원지사	강원도 춘천시 은의동 512-3	(033)240-9532~5
충북지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랑동 743번지(KT6층)	(043)219-6441~5
대전·충남지사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677 월산지방산업단지	(041)866-0541~3
전북지사	전북 정읍시 하북동 848번지	(063)532-6004~8
전남·전북지사	전남 화순군 이암면 품평리 1198-1	(061)370-3502, 370-3521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900-1	(053)850-7531~7
부산·경남지사	부산 사상구 패밭동 560-19 신환은행 3층	(051)320-5350~5360
제주출장소	제주시 일도2동 357-15 대동빌딩 2층	(064)722-6542

공장

공 장	주 소	전화 번호
시화페비닐처리공장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국가공업단지 1마 506호	(031)433-2235
청주페비닐처리공장	충북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62	(043)213-9321
안동페비닐처리공장	경북 안동시 임하면 고곡리 28	(054)23-0083
담양페비닐처리공장	전남 담양군 금성면 원율리 388-1	(061)381-1688
시화페비닐처리공장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국가공업단지 1마 506호	(031)433-2235

재활용사업공제조합현황

공 제 조 합 명	주 소	전화 번호
(사)한국금속캔자원협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5-31 [463-450] www.can.or.kr	(031)706-2913~5 F. (031)706-2932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7 하남빌딩 404호 [150-744] www.eps.or.kr	(02)761-0280, 2 F. (02)761-0283
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8-1 특수건셀빌딩 3층 [137-882]	(02)3476-1214 F. (02)3476-1218
(사)한국윤활유공업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82-233 우리벤처타운 1001호 [150-836] www.kloia.or.kr	(02)2068-6046 F. (02)2068-6049
(사)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경기도 용인시 이등면 덕성리 187-5 [449-831] www.aee.or.kr	(031)323-0475~8 F. (031)323-0479
(사)한국전자재활용협회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477-1 캠퍼스뷰 오피스빌 205호 [137-820] www.kbra.net	(02)3471-1977 F. (02)597-1979
(사)한국조명재활용협회	서울시 마포구 미포동 350번지 강변한신코아빌딩 1015호 [121-703] www.recyclinglamp.org	(02)712-8190 F. (02)707-0446
(사)한국중이택재활용협회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1031-1 곡물회관 4층 [137-851] www.packor.kr	(02)584-1974 F. (02)584-1976
대원타이어공업협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번지 무역회관 1910호 [135-729] www.kotma.or.kr	(02)551-1906~7 F. (02)551-1910
(사)한국PET병재활용협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246-3 신경빌딩 12층 [463-050] www.petrecycle.co.kr	(031)781-4722 F. (031)781-4720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화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4 동우국제빌딩 702호 [150-870] www.replastic.or.kr	(02)360-8800 F. (02)360-8807